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21972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3. 5. 12.

발의자 : 강훈식 · 이성만 · 김윤덕

정춘숙 · 신정훈 · 김한규

박재호 · 장철민 · 이원택

허영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·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지원 · 관리 및 부모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, 현행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어린이집 컨설팅, 부모 교육 · 상담, 영유아 발달 지원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, 영유아, 부모 모두를 위한 지원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).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전단 중 “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”를 “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·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”을 “보육·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, 보육교직원의 정서적·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”을 “보육전문요원,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”으로 한다.

1.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
2.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
3. 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·상담
4. 영유아 발달 지원 예방·상담·치료 지원
5. 보육·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① <u>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·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 | 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① <u>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-----</u> |
| <신 설> | <u>1.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</u> |
| <신 설> | <u>2.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</u> |
| <신 설> | <u>3. 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·상담</u> |
| <신 설> | <u>4. 영유아 발달 지원 예방·상</u> |

